

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

[시행 2023.8.28] [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562호, 2023.8.28, 일부개정]



충북대학교 043)261-2032

제52조(공결승인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절수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<개정 2018. 1. 30., 2021. 12. 31.>
2. 교육실습,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<개정 2016. 11. 28.,2018. 1. 30., 2021. 12. 31.>
3.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<개정 2018. 1. 30., 2019. 7. 25.>
4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<개정 2018. 1. 30.>
5.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<개정 2016. 11. 28.,개정 2018. 1. 30.>
6. 다음 경조사의 경우(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 11. 4., 2016. 11. 28., 2019. 7. 25., 2022. 6. 24.>

구분	대상	기간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본인	20일
	배우자	10일
입양	본인	20일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3일

7.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<신설 2016. 11. 28.,2018. 1. 30.>
 8.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(부)장이 인정한 경우 <신설 2019. 2. 27.><개정 2019. 7. 25.>
- ② 학생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 또는 사후(7일 이내)에 공결승인 신청서(서식 제8호)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 11. 4.>
- ③ 대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